

서울특별시 금천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영희 의원 발의]

| | |
|------|------|
| 의안번호 | 2522 |
|------|------|

발의일자 : 2024. 4. 15.

발 의 자 : 윤영희 의원

찬 성 자 : 정순기 의원

1. 제안이유

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심폐소생술 교육·홍보와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금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금천구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면서 효율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안 제5조).

- 마.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및 관리(안 제6조 ~ 안 제7조).
- 바. 응급의료 지원(안 제8조).
- 사. 홍보 및 포상(안 제9조 ~ 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7조의2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 2) 입법예고 : 2024. 4. 16. ~ 4. 22.

서울특별시 금천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심폐소생술 교육·홍보 및 응급의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급상황 시 구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심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멈춘 위급한 상태로,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심폐소생술”이란 심장과 폐의 활동이 멈추었을 때 인공적으로 혈

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돕는 응급처치 방법을 말한다.

5.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장비를 말한다.

6.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을 포함한 응급의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과 응급의료 지원의 기본 방향
2. 심폐소생술 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대상 및 선정 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심폐소생술 교육 결과 등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결과에 대해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주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
2. 자원봉사자, 경로당 이용자, 복지관, 생활체육시설, 보육시설의 운영자 및 관리자, 보육교사, 학생·교직원
3.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심폐소생술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시

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의무시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 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시설

2. 설치 권장시설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 집합장소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나. 그 밖에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7조(자동심장충격기 관리)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에 따라 응급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응급의료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거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소모품 등 지원

2.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방법 등 응급처치 교육 지원

3. 응급의료 장비 표시판 설치 지원

4.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와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홍보)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사용방법, 응급처치 교육 등 응급의료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 등의 폐지) 다음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결, 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54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 28., 2021. 12. 21.>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救助)·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응급의료종사자”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5.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6. “구급차등”이란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말한다.
7. “응급의료기관등”이란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전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말한다.
8. “응급환자이송업”이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 6. 9., 2011. 3. 8., 2011. 8. 4., 2012. 2. 1., 2016. 3. 29., 2016. 5. 29., 2018. 12. 11., 2019. 12. 3., 2021. 12. 21., 2023. 8. 16.>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구급대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4.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5.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 6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
- 6의3.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중 실제 운영 중인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춘 경우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응급장비의 양도·폐기·이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6. 12. 2.>

③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 5. 14., 2016. 12. 2., 2021. 12. 21.>

④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시설 등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1.>

⑤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장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5. 14., 2016. 12. 2., 2021. 12. 21.>

[본조신설 2007. 12. 14.]

[제목개정 2012. 5. 14.]